

2024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융자규모 : 총 50억원 범위 내

2. 지원대상

- 연수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연수구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하는 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붙임1 참조)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무역업, FTA 인증 수출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구 분	융 자 한 도	융 자 기 간	이자차액보전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 2년(일시상환)	2.0%
중소기업	2억원 이내	• 3년(1년거치 4회 분할 상환)	일반기업 : 2.0% *우대기업 : 2.5%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고용기업(당해 연도에 연수구 주민(주민등록 등/초본 상 1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 1인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

※ 고용기업 조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3개월 단위 고용 확인) 조건, 미이행 시 이차보전금 0.5% 감액 적용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업체 자율 선택)

※ 단, 무분별한 금리인상 방지를 위한 최대 금리 상한선 적용 : 10 %이내(금융기관 일률적용)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은행 : 인천광역시 관내 신한·기업·국민·우리은행
 - * 본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부동산 등) 제공 및 대출이 가능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 전 연수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

4. 지원제외 대상

- 시(市) 또는 구(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미등록 공장(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 500m² 이상인 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소상공인 중 사치·향락 등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붙임2 참조)

5.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연수구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032-749-7815
 - 기업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7. 처리절차

①	신청	기업 → 연수구청	·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후 신청
②	심사	연수구청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심사
③	결정 통보	연수구청 → 기업, 은행	· 지원결정 통보
④	대출 신청	기업 ↔ 은행	· 은행에 대출 신청
⑤	신규대출 내역 통보	은행 → 연수구청	· 신규대출 내역 통보 : 월별
⑥	이차보전금 정산	은행 ↔ 연수구청	· 이차보전금 청구 : 분기별 (은행 → 연수구청) · 이차보전금 지급 검토 및 지급: 분기별 (은행 → 연수구청)

8.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미제출 시 접수 불가)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별첨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별첨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u>일반재무제표</u> 발행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제출 생략 ※ 소상공인 해당없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업종 증빙서류 1부 (중소기업 해당)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비제조업	해당 업종별 증명서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별첨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우대기업 제출서류(해당 시 제출)

구 分	제 출 서 류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기업 확인서(유효기간내)
이전기업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 등)
고용기업	당해 연도 고용 사실 증빙자료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 등/초본 등) ※ 기타 고용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해당 업종별 증명서류(해당 시 제출)

구 分	제 출 서 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업종범위는 [붙임1] 참조)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FTA 인증 수출업체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관세청 발급)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재해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사실 증명서

[붙임 1]

제조업관련서비스 및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1.「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운송업	501
항공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처리업	37012

2.「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동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붙임 2]

1.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세 부 업 종
56211	일반유통 주점업
56212	무도유통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2.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 분	표준산업분류	세 부 업 종
도박 및 게임 관련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75330 중	통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m^2 , 660m^2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